##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55 발의연월일: 2022. 11. 24.

발 의 자:이종배·권명호·이채익

태영호 • 윤두현 • 김석기

김성원 · 김선교 · 성일종

안병길 · 송석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기금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 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되어 약 1 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 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 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 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2022년 12월</u>	<u>2027년 12</u>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	<u>월 31일</u>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	
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	
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	
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	
과할 수 없다.	